

#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sup>1)</sup>

## I. 사건개요

방사성 폐기물(déchets radioactifs, radioactive waste)이란 방사성 핵종<sup>2)</sup>이 규정치 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거나 방사성 핵종에 오염된 물질로서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 및 관련 시설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발생한다.<sup>3)</sup> 방사성 폐기물은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하는 국가들의 경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하는 국가들은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처분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déchets de haute activité) 및 중준위 장수명 방사성 폐기물(déchets de moyenne activité à vie longue)<sup>4)</sup>에 대해서 심지층(深地層) 처분방법(stockage en couche géologique)을 사용하고 있다.<sup>5)</sup>

1) Décision n° 2023-1066 QPC du 27 octobre 2023.

2) 방사능을 가지는 핵종이다. 핵 내에 불안정한 수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포함하는 핵종으로서 방사성 붕괴에 따라 방사선을 방출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천연 방사성 핵종,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인공 방사성 핵종이라 한다. 실용원자력용어사전, 한국원자력산업협회, 2011 (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42434&categoryId=42434&so=st3.asc&viewType=&categoryType=&index=%E3%85%82&page=13>, 2023. 12. 21. 방문).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https://www.kins.re.kr/wacid/rw01>, 2023. 12. 18. 방문.

4) 프랑스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을 방사능의 강도와 방사성 물질이 시간에 따라 방사능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방사능 붕괴(décroissance radioactive)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방사능의 강도가 가장 강한 것을, 중준위 장수명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다음으로 방사능의 강도가 강하고, 방사능 붕괴기간이 가장 긴 방사성 폐기물을 말한다.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18465-nucleaire-comment-traiter-les-dechets-radioactifs>, 2023. 12. 18. 방문.

5) 심지층 처분은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천연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고준위폐기물(사용후 핵연료 포함)의 처분을 위해 보통 지하 300 ~ 1,000미터 깊이의 암반에 처분시설을 만들어 위해도가 높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영구처분의 개념이다. <https://www.kins.re.kr/wacid/rw01>, 2023. 12. 18. 방문.

청구인인 ‘뫼즈 자연환경협회’(association Meuse nature environnement) 등은 고준위 및 중준위 장수명 방사성 폐기물을 위한 심지층 저장시설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선언하는 2022년 7월 7일의 데크레(décret)<sup>6)</sup>에 대해 월권소송(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sup>7)</sup>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이 계속 중인 2023년 5월 12일 및 6월 29일에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제L. 542-10-1조에 대해 국사원(Conseil d’État)에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다.

프랑스 국사원은 2023년 8월 2일 결정<sup>8)</sup>을 통해 ‘환경법전’ 제L. 542-10-1조가 프랑스 환경헌장 제1조 내지 제4조<sup>9)</sup> 등에 근거한 균형 잡히고, 건강을 존중하는 환경에서 생활할 미래 세대의 권리 및 세대 간의 연대의 원칙(principe de solidarité entre les générations)과 헌법 전문, 헌법 제2조<sup>10)</sup> 및 제72-3조<sup>11)</sup> 등에 근거한 박애의 원칙(principe de fraternité)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새로운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뫼즈 자연환경협회’ 등이 청구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제청하였다.

6) ‘데크레’(décret)는 대통령 또는 수상이 발동하는 명령이다. 데크레는 제정절차에 따라서 국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명령, 단순한 명령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러한 데크레는 개입영역에 따라 헌법 제37조의 독자명령과 헌법 제21조의 집행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헌법에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법규)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것이 헌법 제37조에 의한 독자명령이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명령이 헌법 제21조에 의한 집행명령이다.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령용어집, 2008, 283-284면.

7) 월권소송(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행정법원에 대해 일방적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법적 권리구제의 방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률용어집, 2008, 629면.

8) 프랑스 국사원은 2023년 8월 2일의 결정(décision n° 454045)에서 “... 뫼즈 자연환경협회 등은 환경헌장 제1조 내지 제4조 및 환경헌장 전문 제1항 및 제7항에 근거한 균형 잡히고, 건강을 존중하는 환경에서 생활할 미래세대의 권리 및 세대 간의 연대의 원칙과 헌법 전문, 헌법 제2조 및 제72-3조, 환경헌장 전문에 근거한 박애의 원칙을 원용하면서 환경법전 제L. 542-10-1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청구이유는 헌법재판소에 관한 조직법률을 규정하는 1958년 11월 7일의 법률명령 제23-5조가 규정하는 새로운 성격을 가지는 문제이다. ... ”라고 판단하였다.

9) 환경헌장 제1조 “각자는 균형 잡히고, 건강을 존중하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환경헌장 제2조 “모든 사람은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 참여할 의무가 있다.”; 환경헌장 제3조 “모든 사람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환경에 야기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환경침해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를 제한해야 한다.”; 환경헌장 제4조 “법률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모든 사람이 환경에 야기한 손해를 배상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10) 프랑스 헌법 제2조 “④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평등·박애를 국시로 한다.”

11) 프랑스 헌법 제72-3조 “①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평등·박애의 공통적 이상에 입각하여 해외영토 주민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한다.”

## II. 주문

고준위 및 중준위 장수명 방사성 폐기물을 심지층에 가역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의 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법전 제L. 542-10-1조 제2항, 제3항 및 제14항의 제3문과 제4문은 헌법에 합치한다.

## III.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사건의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환경법전’

제 L. 542-10-1조<sup>12)</sup>:

(1) 방사성 폐기물을 심지층에 저장하는 시설은 고정된 핵 시설이다.

(2) 가역성(réversibilité)은 다음 세대가 저장시설을 연속적으로 건설 및 운영하고자 하거나, 이전에 한 선택을 재평가하고 관리방안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다.

(3) 가역성은 기술적 발전을 통합하고, 특히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의 목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저장소의 점진적 건설, 구상의 적응성 및 운영의 유연성에 의해 실현된다. 가역성은 저장소의 운영 및 폐쇄 전략에 부합하는 방법과 기간에 따라 이미 저장된 방사성 폐기물 패키지의 회수 가능성을 포함한다.

(4) 심지층 저장소의 가역적 성격은 제L. 593-1조<sup>13)</sup>에서 규정하는 이익의

---

12) ‘환경법전’ 제 L. 542-10-1조는 ‘고준위 및 중준위 장수명 방사성 폐기물을 심지층에 가역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의 설치방법을 규정하는 2016년 7월 25일 법률’(LOI n° 2016-1015 du 25 juillet 2016 précisant les modalités de création d'une installation de stockage réversible en couche géologique profonde des déchets radioactifs de haute et moyenne activité à vie longue) 제1조에 의해 개정되었음.

13) 환경법전 제L. 593-1조 “제L. 593-2조에서 열거하는 고정된 핵 시설은 공공 안전, 보건 및 위생 또는 자연 및 환경 보호에 미칠 수 있는 위험 또는 불편으로 인해 본 편 제Ⅲ장 및 제Ⅵ장의 법체계를 따른다. ... ”

보호를 고려하면서 보장되어야 한다. 심지층 저장소 내의 가역성 원칙의 실현에 대한 검토는 제L. 593-18조<sup>14)</sup>에서 규정한 주기적 재심사와 부합되게 최소한 5년마다 이루어진다.

(5) 심지층 저장소 시설이 존속하는 동안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립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관’(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은 관련 당사자 및 국민들과 협력하여 심지층 저장소 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 마다 작성 및 수정한다.

(6) 심지층 저장소의 운영은 특히 현위치 시험계획을 통해 심지층 저장소 시설의 가역적 성격 및 안전적 시연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산업적 시범단계부터 시작된다. 일체의 폐기물 패키지는 이 단계 동안 쉽게 회수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적 시범단계는 폐기물 패키지의 회수 테스트를 포함한다.

(7) 다른 고정된 핵 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예외로:

(8) -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은 지하 실험실에서 연구되는 지질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9) - ... 허가의 발급은 운영자가 지하 공사를 포함하는 지표 및 하층토의 설비의 토대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이거나, 운영자가 ... 부여되는 의무를 토지 소유자가 준수하겠다는 약정을 획득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10) - 본 권, 제IX편의 적용과 관련하여, 지하 공사를 포함하는 하층토는 지하공사의 토대로 사용되는 토지를 대신할 수 있다.

(11) - 심지층 저장소 시설의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 ‘국립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관’(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이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 공개 토론이 진행된다. ...

(12) - 심지층 저장소 시설의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제L. 542-3조<sup>15)</sup>에 규정된 국가위원회의 보고서,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Autorité

---

14) 환경법전 제L. 593-18조 “고정 핵 시설의 운영자는 최선의 국제적 관행을 고려하여 자신의 핵 시설을 주기적으로 재심사해야 한다. ... ”

15) 환경법전 제L. 542-3조 “국가위원회는 제L. 542-1-2조가 규정하는 국가 계획이 정한 방향을 참조하여, 방사능 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조사의 발전 상태를 매년 평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 ”

de sûreté nucléaire)<sup>16)</sup>의 의견 및 데크레가 정하는 의견 조사 지역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수집된다.

(13) - 공적 토론의 보고서, 제L. 542-3조에 규정된 국가위원회의 보고서 및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의 의견이 첨부된 심지층 저장소 시설의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서는 ‘과학적 및 기술적 선택의 평가에 관한 의회 사무국’(Office parlementaire d’é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에 전달되며, ‘과학적 및 기술적 선택의 평가에 관한 의회 사무국’은 이를 평가하며, 하원과 상원의 관계 상임위원회에 평가한 사항을 보고한다.

(14) - 심지층 저장소 시설의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을 심사할 때, 심지층 저장소 시설의 안전성은 최종적인 폐쇄를 포함한 시설 관리의 여러 단계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법률을 통해서만 심지층 저장소 시설의 최종적 폐쇄를 허용할 수 있다. 심지층 저장소 시설의 설치를 위한 허가는 예방적 조치로 저장 시설의 가역성을 보장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정한다. 이 기간은 100년 이상이어야 한다. 심지층 저장소 시설의 설치를 위한 허가는, 계획이 본 조가 정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L. 593-8조<sup>17)</sup>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국사원의 데크레로 부여된다.

(15) - 제L. 593-11조<sup>18)</sup>에 규정된 운영의 허가는 산업적 시범단계로 제한된다.

(16) 산업적 시범단계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립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관’의 보고서, 제L. 542-3조에 규정된 국가위원회의 의견,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의 의견 및 데크레가 정하는 의견 조사 지역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수집된다.

---

16)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Autorité de sûreté nucléaire)은 민간의 원자력 활동과 방사선 방호를 통제하는 독립행정청이며,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명령안에 대해서 자문활동을 한다.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72644-surete-nucleaire-prevention-et-gestion-des-risques#:~:text=L'ASN%20est%20une%20autorit%C3%A9,relatif%20%C3%A0%20la%20s%C3%BBret%C3%A9%20nucl%C3%A9aire.,> 2023. 12. 18. 방문.

17) 환경법전 제L. 593-8조 “허가는 원자력 안전청의 의견제출 및 공청회의 개최 후에 발급된다...”

18) 환경법전 제L. 593-11조 “원자력 안전청은 고정된 핵 시설의 운영을 허가한다. 원자력 안전청은 이를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장관에게 통지한다. 운영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7) 제L. 542-3조에 규정된 국가위원회의 보고서 및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의 의견이 첨부된 ‘국립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관’의 보고서는 ‘과학적 및 기술적 선택의 평가에 관한 의회 사무국’에 전달되며, ‘과학적 및 기술적 선택의 평가에 관한 의회 사무국’은 이를 평가하며, 하원과 상원의 관계 상임 위원회에 평가한 사항을 보고한다.;

(18) - 정부는 저장소의 가역성의 실현조건을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적 및 기술적 선택의 평가에 관한 의회 사무국’의 권고사항을 고려한 정부 제출 법률안을 제출한다.

(19) -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은 심지층 저장소 시설의 완전한 운영에 대한 허가를 한다.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심지층 저장소 시설의 가역성을 보장하지 않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심지층 저장소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없다. ...

‘환경법전’

제L. 542-1조:

(1) 방사능 원 또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의 운영 또는 폐기에 따른 모든 성격의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성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인간의 건강,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

#### IV. 판단

1)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심지층 저장소 시설의 가역성을 100년 이상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들은 환경 특히 수자원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가 이와 같은 선택을 변경할 수 없으며, 미래 세대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미래 세대의 역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균형 잡히고, 건강을 존중하는 환경에서 생활할 미래

세대의 권리 및 ‘세대 간의 연대의 원칙’(principes de solidarité et de fraternité entre les générations)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판시이유 2).

2)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은 환경법전 제L. 542-10-1조 제2항, 제3항 및 제14항 제3문과 제4문이다(판시이유 3).

3) 환경헌장 제1조는 “각자는 균형 잡히고, 건강을 존중하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판시이유 4). 환경헌장 전문 제7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선택은 미래 세대와 다른 사람들 그 자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미래 세대와 다른 사람들의 역량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판시이유 5).

4) 환경헌장 전문 제7항에 의해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된 환경헌장 제1조로부터, 입법자가 균형 잡히고, 건강을 존중하는 환경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가능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채택할 때, 현재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선택이 미래 세대와 다른 사람들 그 자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미래 세대와 다른 사람들의 역량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미래 세대와 다른 사람들의 관련된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판시이유 6).

5) 균형 잡히고, 건강을 존중하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입법자의 제한은 헌법적 요청과 관련성이 있거나, 공익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며,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적이어야 한다(판시이유 7).

6) 환경법전 제L. 542-10-1조는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저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한다(판시이유 8). 심판대상조항은 심지층 저장 시설에서의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은 최소한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실현되는 가역성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판시이유 9). 심

판대상조항은 지하 시설에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성과 존속 기간의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 가능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판시이유 10).

7)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심판대상조항의 제정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을 채택하면서 방사성 폐기물이 방사성 물질의 확산이라는 장기적 위험에 대처하도록 환경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저장되기를 원했으며,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부담은 미래 세대에게만 전가되지 않기를 원했다. 따라서 입법자는 환경 보호 및 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목적을 추구했다. 법률을 통해 채택한 방법이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입법 목적에 명백히 부적절하지 않다면, 입법자가 스스로 설정한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니다(판시이유 11).

8) 둘째로, 환경법전 제L. 542-1조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는 인간의 건강,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적 저장에 필요한 수단의 실천은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방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판시이유 12).

9)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환경법전 제L. 542-10-1조는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저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요청을 준수하는데 적합한 여러 보장 또한 규정하고 있다(판시이유 13).

10) 첫째로, 방사성 폐기물을 심지층 저장 시설에 저장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방사성 폐기물의 연속적인 저장층을 건설 및 운영하고, 이전의 선택을 재평가하고, 관리 방안을 발전시키는 역량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가역



성은 저장 시설에 대한 건설의 점진성, 설계의 적합성 및 운영의 유연성에 의해 실현되며,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운영 및 폐쇄 전략에 부합하는 방법 및 기간 동안에 이미 저장된 방사성 폐기물 폐기지의 회수 가능성을 포함한다(판시이유 14).

11) 둘째로,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저장 시설의 설치에 특별한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허가 신청은 지하 실험실에서 연구되는 심지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립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관’이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공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법전 제L. 542-3조에 규정된 국가위원회의 보고서,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의 의견이 제출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된다. 그리고 허가 신청서는 ‘과학적 및 기술적 선택의 평가에 관한 의회 사무국’에 전달되며, ‘과학적 및 기술적 선택의 평가에 관한 의회 사무국’은 허가 신청서를 평가하며, 하원과 상원의 관계 상임위원회에 평가한 사항을 보고한다(판시이유 15).

12) 허가 신청서를 심사할 때,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저장 시설의 안전성은 최종적인 폐쇄를 포함하여 시설 운영의 여러 단계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발급된 허가는 예방적 조치로 저장 시설의 가역성이 보장되는 100년 이상의 최소 기간을 정한다(판시이유 16).

13) 뿐만 아니라, 운영 허가는 특히 현위치 시험계획(programme d'essais *in situ*)을 통해 심지층 저장소 시설의 가역적 성격 및 안전적 시연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시범단계로 제한된다. 일체의 방사성 폐기물은 이 단계 동안 쉽게 회수될 수 있어야 한다(판시이유 17).

14) 시범단계의 결과에 대해서 ‘국립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허가 절차에 개입한 기관들과 동일한 기관에 전달된다. 저장소의 가역성의 실현조건을 채택한 정부제출 법률안이 제출된 다음에, 심지층 저장소 시설의 가역성을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은 저장소 시설의 완전한 운영에 대한 허가를 한다(판시이유 18). 그리고 법률을 통해서만 저장소 시설의 최종적 폐쇄를 허용할 수 있다(판시이유 19).

15) 마지막으로, 5년마다 관련 당사자 및 국민 전체와 협력하여 심지층 저장소 시설 운영의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심지층 저장소 시설이 존속하는 동안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된다(판시이유 20).

16) 위에서 실시한 보장들을 고려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환경헌장 제1조의 요청에 반하지 않는다(판시이유 21).

17)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에 합치한다(판시이유 22).

#### IV. 결정의 의의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방법을 규정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인간의 건강, 안전 및 환경보호라는 목적 등을 위한 여러 보장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입법자는 균형 잡히고, 건강을 존중하는 환경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가능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채택할 때, 현재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선택이 미래 세대와 다른 사람들 그 자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미래 세대와 다른 사람들의 역량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입법자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sup>19)</sup>

이와 같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심사기준으로 환경현장 전문의 미래 세대에 관한 표현을 언급한 것에 그친 종래의 결정들<sup>20)</sup>과 다른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19)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1601-dechets-nucleaires-le-droit-des-generations-futures-reconnu>, 2023. 12. 18. 방문.

20) Décision n° 2019-823 QPC du 31 janvier 2020; Décision n° 2022-843 DC du 12 août 2022.